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 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 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C031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브이아이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작성 기준일 : 2026년 03월 02일

2.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03월 20일

3.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총 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4.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12월 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요 약 정 보	6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6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9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집합투자기구를 전부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ESG 평가결과의 개선, 투자전략의 이행 등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정보 >

작성기준일 : 2026.03.02.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 C0316]

투자 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브이아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KRX ESG Leaders 150 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수의 구성종목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가격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위험, 원본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된 ESG Leaders 150 지수(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 ESG Leaders 150 Index”를 말한다)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ESG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종목 선정시 지수방법론에 따라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를 통해 ESG 목표를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2. 투자전략 가.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종목으로 평가된 15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ESG Leaders 150 지수를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 유동성 및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종목군을 부분 복제하여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나. 포트폴리오 구성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기초지수인 ESG Leaders 150 지수의 구성종목을 복제편입하여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발생, 거래유동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비율을 조절하거나 투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SG Leaders 150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충격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거나 일부 분할 매매할 수도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예상배당금 인식기간 중의 설정환매 대응 및 투자신탁 비용 충당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부분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시장 및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투자신탁재산 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의 투자비율을 조정하고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그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①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②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또는 CB전환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③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div>④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div> <div>⑤ 기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시</div> <div>라. 기초지수 소개</div> <div>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종목으로 평가된 15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2015년 12월 21일부터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수산출은 ESG 통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편입비중이 결정되는 ESG통합점수 가중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div>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추가납입가능),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상장지수신탁																																
투자비용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5">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th><th colspan="5">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th></tr><tr><th>판매수수료</th><th>총보수</th><th>지정참가 회사보수</th><th>동종유형 총보수</th><th>총보수·비용</th><th>1 년</th><th>2 년</th><th>3 년</th><th>5 년</th><th>10 년</th></tr><tr><td>투자신탁</td><td>-</td><td>0.095</td><td>0.02</td><td>-</td><td>0.1913</td><td>20</td><td>40</td><td>62</td><td>108</td><td>244</td></tr></table> <div>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div> <div>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iv> <div>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div>	구 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투자신탁	-	0.095	0.02	-	0.1913	20	40	62	108	244
구 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투자신탁	-	0.095	0.02	-	0.1913	20	40	62	108	244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최초설정일</th><th>최근 1 년</th><th>최근 2 년</th><th>최근 3 년</th><th>최근 5 년</th><th>설정일 이후</th></tr><tr><td>25.03.03 ~ 26.03.02</td><td>24.03.03 ~ 26.03.02</td><td>23.03.03 ~ 26.03.02</td><td>21.03.03 ~ 26.03.02</td><td>17.12.12 ~ 26.03.02</td></tr><tr><td>투자신탁(%)</td><td rowspan="3">2017.12.12</td><td>93.00</td><td>43.26</td><td>30.12</td><td>16.29</td><td>11.58</td></tr><tr><td>비교지수(%)</td><td>90.27</td><td>40.99</td><td>28.16</td><td>14.01</td><td>9.22</td></tr><tr><td>수익률 변동성(%)</td><td>19.60</td><td>17.93</td><td>17.47</td><td>16.72</td><td>19.46</td></tr></table> <div>주1) 비교지수 : KRX ESG Leaders 150 Index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div> <div>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div> <div>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div>	구 분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3.03 ~ 26.03.02	24.03.03 ~ 26.03.02	23.03.03 ~ 26.03.02	21.03.03 ~ 26.03.02	17.12.12 ~ 26.03.02	투자신탁(%)	2017.12.12	93.00	43.26	30.12	16.29	11.58	비교지수(%)	90.27	40.99	28.16	14.01	9.22	수익률 변동성(%)	19.60	17.93	17.47	16.72	19.46	
구 분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03.03 ~ 26.03.02	24.03.03 ~ 26.03.02	23.03.03 ~ 26.03.02	21.03.03 ~ 26.03.02	17.12.12 ~ 26.03.02																											
투자신탁(%)	2017.12.12	93.00	43.26	30.12	16.29	11.58																											
비교지수(%)		90.27	40.99	28.16	14.01	9.22																											
수익률 변동성(%)		19.60	17.93	17.47	16.72	19.46																											
운용전문인력	<div>(2026.03.02 현재)</div> <table><tr><th rowspan="3">성명</th><th rowspan="3">생년</th><th rowspan="3">직위</th><th colspan="2">운용현황</th><th colspan="4">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th><th>운용경력 년수</th></tr><tr><th rowspan="2">집합투자 기구 수</th><th rowspan="2">운용 규모</th><th colspan="2">운용역</th><th colspan="2">운용사</th><th rowspan="2">전체 ESG 펀드</th></tr><tr><th>최근 1 년</th><th>최근 2 년</th><th>최근 1 년</th><th>최근 2 년</th></tr><tr><td>임성철</td><td>1992</td><td>책임(과장)</td><td>9 개</td><td>705억원</td><td>131.09</td><td>-</td><td>146.75</td><td>61.37</td><td>1년 8개월</td></tr></table> <div>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div> <div>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div> <div>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div> <div>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div> <div>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div>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전체 ESG 펀드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임성철	1992	책임(과장)	9 개	705억원	131.09	-	146.75	61.37	1년 8개월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전체 ESG 펀드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임성철	1992	책임(과장)	9 개	705억원	131.09	-	146.75	61.37	1년 8개월																								
투자자	<div>·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div>																																

유의사항	<div>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v>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div>																
주요투자 위험	<table> <tr> <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 <td>원본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td></tr> <tr> <td>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KRX ESG Leaders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및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td></tr> <tr> <td>포트폴리오 집중투자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의 ESG 평가 3요소가 우수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 현물 및 개별주식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td></tr> <tr> <td>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 (NAV)와의 괴리 위험</td><td>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 <td>유동성 제약 종목 편입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td></tr> <tr> <td>전략수행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td></tr> <tr> <td>상장폐지 위험</td><td>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td></tr> </tabl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KRX ESG Leaders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및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의 ESG 평가 3요소가 우수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 현물 및 개별주식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 (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종목 편입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KRX ESG Leaders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및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의 ESG 평가 3요소가 우수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 현물 및 개별주식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 (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종목 편입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재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SG 관련 요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외에 외부 평가기관의 기준 변경 및 투자기업의 컨트롤러시(Controversy, 기업 운영, 제품이 ES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 또는 진행중인 상황) 이슈 발생시 1)심각성, 2)구조성 여부, 3)진행상황에 따라 ESG평가 결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위 등급 종목의 투자비중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직전일의 펀드순자산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산출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viamc.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브이아이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727-27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viamc.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총 좌수 및 금액에 제한이 없음
효력발생일	2026년 03월 2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viamc.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C031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 투자신탁(또는 “ETF”라고 함)(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비해당)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1) 모집(판매) 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 되거나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17년 12월 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viamc.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은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상 장 요 건

1. 펀드규모 : 상장예정인 상장지수펀드의 자본금 또는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만주 이상이거나 수익증권의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2. 지정참가회사 등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일 것
 - 나.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회원 1사 이상과 업무규정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다. 해당 상장지수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유가증권시장에 다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일부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6에 따른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하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 (2) 해당 상장종목 중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회원의 전부가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할 것
3. 기초자산 : 상장지수펀드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가. 거래소 시장, 외국 거래소 시장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 나. 가목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 (1)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시장
 - (2) 법시행령 제179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채권시장과 이와 비슷한 외국채권시장
 - (3) 외국환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매매기준율과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산출하는 시장
 - (4) 그 밖에 신뢰성 있는 가격 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
4. 자산구성방법 :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 가.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

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한다.

(1)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 이상

(2)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나.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 이상 편입할 것다.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3)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 상장지수펀드"라 한다)

(4)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5)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가. 장외파생상품의 계약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1) 법 제12조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 이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받거나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이 경우 보증인(거래상대방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3) 법 제30조제1항의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이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금융투자업규정」제3-6조제3호의 순자본비율(이하 "순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인 때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보증인이 있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보증인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4) 목표 수익률 달성 등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규상장신청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인정될 것

(5)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

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다음의 위험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거래상대방 위험의 평가기준, 평가주기 등 위험평가 방법

(2) 거래상대방 위험의 적시 인식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다.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하여 담보를 설정한 경우 다음의 담보관리체계를 갖출 것. 이 경우 담보 관리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의 요건

(2)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 방법

(3)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은 예탁결제원(외국 예탁결제기구를 포함한다)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거래소가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기관인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장외파생상품 외의 자산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자산이 유동성, 시가평가 용이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존속기한 : 상장지수펀드의 존속기한이 없을 것.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

7. 지수 등 이용계약 : 상장지수펀드의 목표 가격 또는 지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는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8. 상장지수펀드의 주권(이하 “상장지수펀드주권”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회사주권의 등록에 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1조 제3항 제1호, 소송 등에 관한 같은 항 제4호,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주1) 지정참가회사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상장폐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 장 폐 지 요 건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관계수(이하 “상관관계수”라 한다)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 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 (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1항 제5호 가목 (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별표 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변경상장을 포함한다)·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www.krx.co.kr)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종류)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C031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7-12-12	최초설정
2017-12-13	한국거래소 상장
2019-09-16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탁계약 변경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반영
2020-01-10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의무해지 등)
2020-01-17	신탁계약 변경 - 집합투자업자명 변경 : 하이자산운용(주) → 브이아이자산운용(주) - 투자신탁명 변경 : 하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 브이아이 FOCUS ESG Leaders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2021-01-13	- 신탁계약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신탁계약서 기재사항 등)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최직근 결산 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2022-07-08	·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 한국예탁결제원 → 신한아이타스(주)(2022-07-11 시행) · 신탁계약 변경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변경(2022-07-11 시행) - 자본시장법 등 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리
2023-01-13	신탁계약 변경 - 투자대상자산 추가(환매조건부매수)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용어정리)
2024-02-01	ESG관련 내용 추가
2024-12-20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배광웅 → 임성철
2026-03-20	신탁계약 변경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

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브이아이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02-727-27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2026.03.02 현재)		이 력
임성철	1992	책임운용역 (과장)	전체	1년 8개월	건국대학교 경영학
			ESG 펀드	-	흥국증권 리서치팀(`17.05~`21.07) 현 브이아이자산운용 Equity그룹(`21.08~현재)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6.03.02 현재)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임성철	9 개	705억원	131.09	-	146.75	6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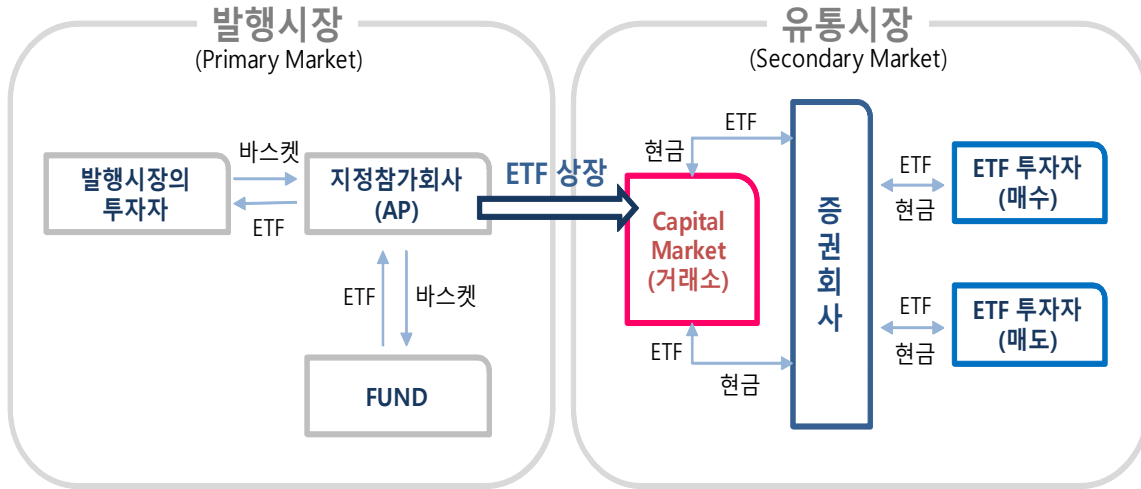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하며, 1년 미만의 수익률은 제외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주5)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다. 책임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투자운용인력	운용 기간
배 광 응	2017-12-12 ~ 2024-12-19
임 성 철	2024-12-20 ~ 현 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ESG Leaders 150 지수(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 ESG Leaders 150 Index”를 말하며, 이하 기초지수라 합니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ESG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는 종목 선정시 지수방법론에 따라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여 지수를 추종합니다. 이를 통해 ESG 목표를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투자대상의 조건)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	집합투자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③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④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⑤	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⑥	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⑦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의 예치(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 ①과 ②의 규정은 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과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p>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대상 ③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 증권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한다.</p> <p>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p> <p>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 증권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ESG관련 투자대상</p> <p>ESG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종목으로 평가된 15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KRX ESG Leaders 150 Index를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p>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가.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③ 집합투자증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⑥ 상장지수투자 신탁의 종목구성 제한	추적대상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 지수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지수산출기관 의 지수 편입 종목 교체일 및 교체일 직 전 영업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투자대상 ②부터 ⑤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는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구성된 ESG Leaders 150 지수(한국거래소가 산출하여 발표하는 “KRX ESG Leaders 150 Index”를 말한다)를 추적 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기본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ESG기준원의 ESG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종목으로 평가된 150개 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ESG Leaders 150 지수를 완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리스크, 유동성 및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종목군을 부분 복제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추적대상지수) : KRX ESG Leaders 150 Index 100%

[ESG 투자의 정의]

ESG 투자란 재무분석과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비재무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위험 및 기회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기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ESG 투자의 핵심개념]

 <p>ENVIRONMENTAL (E)</p> <p>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수자원 등 고갈 폐기물 및 오염 산림벌채</p>	 <p>SOCIAL (S)</p> <p>노동조건 지역공동체 갈등 및 충돌 건강 및 안전 직원관계와 다양성</p>	 <p>GOVERNANCE (G)</p> <p>임원급여 뇌물 및 부패 정치로비와 기부 이사회 다양성, 구조 세금전략</p>
---	--	--

(나) 포트폴리오 구성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기초지수인 ESG Leaders 150 지수의 구성종목을 복제편입하여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구성종목 중에서 부도발생, 거래유동성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비율을 조절하거나 투자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SG Leaders 150 지수의 구성종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충격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하거나 일부 분할 매매할 수도 있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예상배당금 인식기간 중의 설정환매 대응 및 투자신탁 비용 충당을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부분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유사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시장 및 투자대상 종목의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투자신탁재산내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의 투자비율을 조정하고 투자종목을 교체하거나 그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①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정기적 또는 수시 교체시
- ②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유상증자 또는 CB전환 등으로 인한 시가비중 변동시
- ③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부도 발생시
- ④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종목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 발생시
- ⑤ 기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시

(라) 기초지수 소개

KRX ESG Leaders 150 지수
<p>1. 지수의 개요</p> <p>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 중에서 한국ESG기준원이 평가한 ESG평가가 우수한 15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여 개별 종목의 ESG통합점수 비중으로 가중하는 방식의 지수입니다.</p> <p>2. 지수산출기관 : 한국거래소(KRX)</p> <p>3. 지수 산출방법 등</p> <p>가. 기준일 및 기준지수 : 2010년 01월 04일, 1,000pt</p> <p>나. 산출방식 : ESG통합점수 가중방식</p>

다. 구성종목 선정방법

1) 심사대상종목

심사연도의 정기변경일이 속한 월의 전전월 최종 매매거래일(이하 "심사기준일") 현재 KRX BMI 구성종목 중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하는 당해연도 ESG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합니다. 다만,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심사대상종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심사기준

- ESG점수기준 : 심사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한국ESG기준원이 ESG 평가를 한 종목의 사회, 지배구조, 환경 각 부문별 점수(이하 "사회점수, 지배구조점수 및 환경점수") 및 통합점수
- 유동성기준 : 심사기준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3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 주된 영업기준 : 심사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사업연도 영업매출액비중

3) 구성종목 선정 : 다음 각 항목을 적용하여 150종목 선정

① (1차선정) 심사대상종목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평가대상종목으로 선정합니다.

- 유동성기준 순위가 상위 90% 이내일 것
-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 관련 주된 매출 비중이 20% 미만일 것

② (2차선정)

i. 1단계 : 1차에서 선정된 평가대상종목 중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점수, 지배구조점수, 환경점수 중 어느 하나의 순위가 25% 이내일 것
- 산업별 해당종목의 사회점수, 지배구조점수, 환경점수 순위가 모두 해당 섹터내에서 50% 이내일 것

ii. 2단계 : 1단계에서 선정된 종목 중 ESG 통합점수가 높은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150종목을 선정합니다. ESG 통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현재 유동시가총액이 큰 순서로 선정합니다.

iii. 3단계 : 2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은 기존 구성종목은 ESG 통합점수 순위가 175위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iv. 4단계 : 3단계까지 선정된 종목수가 150종목을 초과할 경우 기존 구성종목이 아닌 종목 중 ESG 통합점수 순위가 낮은 순으로 제외합니다. ESG 통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심사기준일 현재 유동시가총액이 작은 순으로 제외합니다.

4) 정기변경 : 연 1회(KOSPI200 선물시장 12월 결제월 최종 거래일의 다음 매매 거래일)

5) 수시변경

① 부적합종목 제외 : 수시변경사유(상장폐지 결정,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종목)가 발생하는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합니다.

② ESG등급 수시조정 반영 : 한국ESG기준원이 ESG 등급을 수시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외 합니다.

- ESG 통합등급이 B+ 미만일 것
- ESG 통합점수가 전체 구성종목의 평균 보다 낮을 것

4. ESG 평가

가. 평가대상

- 유가증권시장 : 모든 상장회사
- 코스닥시장 : 코스닥 대형주,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기관투자자가 평가 요청한 회사

나. 평가 프로세스

- 1) 기초데이터 수집 : 기업공시, 감독기구/지자체 등 기관 자료, 미디어 자료
- 2) 기본평가 : ESG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를 평가
- 3) 심화평가 : 기업가치 훼손 우려가 높은 ESG 관련 쟁점이 발생했는가를 평가
- 4) 평가검증 : 데이터 검증 실시
- 5) 기업피드백 : 평가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피드백 실시

다. 평가등급

- 평가점수 : 기본평가 최고점수 300점 / 심화평가 최대감점 -60점
- 평가등급 : 7등급(S ~ D)

※ 해당 지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거래소(KRX)의 홈페이지(<http://marketdata.kr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지수의 산출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지수산출업자가 지수를 정상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기초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방법 등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51조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한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viamc.kr>) 등에 매일 공고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방안

- ① 이 투자신탁은 보수 및 비용의 발생, 종목보유에 따른 현금배당, 투자신탁재산의 편입비용,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발생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 등의 다양한 사유로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적 점검에도 불구하고,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편입종목 발행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도 등으로 인하여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간 트레이킹 에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추적오차를 관리할 예정이며, 시장변동, 설정/해지에 따른 정교한 리밸런싱으로 익스포저를 관리하고 투자신탁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여 추적오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3) ESG 요소 평가 방법

이 투자신탁은 ETF로 자체평가방법이나 외부평가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기초지수의 지수산출기관이 이 기초지수방법론에 따라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산출합니다.

(4)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추구하는 주주활동의 목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ESG Leaders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이 투자신탁은 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

위험	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을 증권 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자산을 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 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자산을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과정에서 거래량 부족으로 호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콜론) 및 예금잔액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을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단기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 등으로 인해 만기일에 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환매연기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자금 미상환에 따른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내의 현금 중 자산에 투자되지 않는 잔액은 신탁회사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은행, 한국증권금융 등)의 현금 부족 및 부도로 인해 당해 예금 잔액은 물론 이자수령 등의 차질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KRX ESG Leaders 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을 그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및 위탁매매수수료 등 관련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초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의 ESG 평가 3요소가 우수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추적대상지수의 성과에 근접한 성과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 현물 및 개별주식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시장 전체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구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신용위험 및 가격변동 위험 등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시장수익률 추종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변경 또는 중단 위험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지수산출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 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 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일시 또는 상당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 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이 투자신탁에 추적오차가 발생하고 동 추적오차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수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p>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의 월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재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p>
<p>유동성 제약 종목 편입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ESG 관련 요소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변동성 외에 외부 평가기관의 기준 변경 및 투자기업의 컨트로버시(Controversy, 기업 운영, 제품이 ES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 또는 진행중인 상황) 이슈 발생시 1)심각성, 2)구조성 여부, 3)진행상황에 따라 ESG평가 결과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위 등급 종목의 투자비중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운용실적 위험</p>	<p>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p>
<p>환매에 따른 위험</p>	<p>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p>펀드규모위험</p>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적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환매연기 위험</p>	<p>다음과 같은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거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p>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p>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p>상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될 수 있습니다.</p>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p>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p> <p>※ 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p>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p>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p>
총비용	<p>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연 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p>
과세 위험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p>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증권대차 거래	<p>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p>

위험	생활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기초지수인 ESG Leaders 150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가 등락에 따라 펀드 수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설정기간이 3년 이상된 펀드로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예의 투자를 통한 실세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높은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97.5% VaR) : 37.15%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주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수익증권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투자신탁의 설정에 의한 매입은 법인투자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을 원하는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50,000좌, 100,000좌 등)에 해당하는 증권 및 자금을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수령하게 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해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금전에 의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설정단위(Creation Unit)

-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3) 정산금액(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 ① 정산금액 산출 : 설정요청일에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증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 ②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증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설정요청일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차액에 대한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상기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 익일에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사항

- (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투자신탁 설정요청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은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 설정요청은 그 익영업일에 요청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요청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요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요청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요청의 취소는 설정요청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유가증권 및 현금을 말합니다)을 납부(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95% 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상기 (나)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와 그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① 대납현금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한국거래소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15%를 곱하여 산출
- ②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상기 ①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③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

(라) 투자자가 상기 (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상기 (라)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합니다.

(바) 지정참가회사가 상기 (마)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동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자산을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동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 ②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부금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사) 상기 (가)~(바)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 상기 (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 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3%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①~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상기 ①~④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투자자의 설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취소에 따른 자산 전부를 금전으로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교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 설정 절차

구분	일자	내용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 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설정청구일	T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주식, 현금 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요청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요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요청일에 청구된 설정요청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요청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설정일	T+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요청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시간을 T+2일 한국거래소 영업개시 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요약				
구분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등 이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투자자계좌에 수익 증권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 구성내역통보 (한국거래소 등)	설정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 기관을 통한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	--	--	--	--------------

나. 환매

구분		수수료(비용)		비고
		발생	미발생	
중도환매	허용		○	환매수수료 없음
	불가			

(1) 환매방법

① 증권시장을 통한 수익증권 매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매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와 동일합니다.

②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를 원하는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 (CU :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50,000좌, 100,000좌 등)로만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금전이 아닌 증권과 금전의 결합으로 수령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가)~(다)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투자자가 상기 (가)~(라)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상기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투자자인 경우 환매자산 지급 방법]

상기 (마)~(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에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상기 (가)~(바)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마)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아) 상기 (사)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상기 (가)~(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3%를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의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⑤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차) 상기 (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수익증권 환매 절차

구분	일자	내용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 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환매청구일	T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환매일	T+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요약				
구분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 자산(주식 및 현금)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수익 증권 인출 및 환매자 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한국거래소등)	환매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말소의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자산이체 및 이체 내역 확인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조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나)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게시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최초 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초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게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viamc.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집합투자재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시가형성 전의 비상장주식	구주식의 평가액. 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신주식의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함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권(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날에 공표하는 가격)에 의함.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되,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부도채권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에 따라 평가

주1)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는 등 상기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세부기준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부과기준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 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 시
기타비용	-	발생 시

주1)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으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0.05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10영업일 이내 지급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포함)	0.02	
신탁업자	0.01	
일반사무관리	0.015	
총보수	0.095	
기타비용	0.0963	발생 시
총보수·비용 비율	0.1913	-
(동종유형 총 보수)	-	-
합성총보수·비용 비율	0.1913	-
증권거래비용	0.0201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01.01 ~ 2025.12.31]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국내자산일 경우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해외자산일 경우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217

주4)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금융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금융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 2025.01.01 ~ 2025.12.3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이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기초지수를 구성함에 있어, 지수산출 업자가 지수구성에 필요한 제3기관(업체)의 ESG 관련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지수산출업자가 부담하며 이 투자신탁에서는 지수사용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 1,000원)

가입 시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0	40	62	108	244
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	20	40	62	108	24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①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②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다만, ④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③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④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1)의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②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
- ③ 대상 투자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투자자
- ④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 (3)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자가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투자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9 기(2025.01.01 - 2025.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8기(2024.01.01 - 2024.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7기(2023.01.01 - 2023.12.3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제 9 기	제 8기	제 7기
	(2025.12.31)	(2024.12.31)	(2023.12.31)
운용자산	9,674,198,154	4,649,009,206	6,272,756,012
증권	9,415,336,644	4,631,494,083	6,249,361,46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58,861,510	17,515,123	23,394,55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7,038,367	35,517,351	55,309,763
자산총계	9,711,236,521	4,684,526,557	6,328,065,77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35,911,065	11,609,112	2,273,401
부채총계	235,911,065	11,609,112	2,273,401
원본	5,827,488,000	4,370,616,000	5,827,488,000
수익조정금	-1,390,305,580	-202,499,733	-218,012,688
이익잉여금	5,038,143,036	504,801,178	716,317,062
자본총계	9,475,325,456	4,672,917,445	6,325,792,374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제 9 기	제 8기	제 7기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운용수익	4,656,993,528	150,148,510	936,535,702
이자수익	2,239,697	1,848,064	2,886,738
배당수익	228,470,737	131,965,950	134,723,588

매매/평가차익(손)	4,422,994,381	15,935,673	798,019,123
기타 수익	3,288,713	398,823	906,253
운용비용	21,919,085	19,075,613	23,001,292
관련회사 보수	8,810,981	6,112,976	10,337,325
매매수수료	0	0	0
기타 비용	13,108,104	12,962,637	12,663,967
당기순이익	4,635,074,443	131,072,897	913,534,410
매매회전율(%)	20.90	25.91	17.06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기 3.3백만원, 제8기 0.4백만원, 제7기 0.91백만원 발생)
-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9기 0원, 제8기 0원, 제7기 0원 발생)
- 주4)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5) 요약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운용펀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보수 및 비용 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주6)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1.01 - 2025.12.31)			전기(2024.01.01 - 2024.12.31)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546	1.3629	0.03	4,001	1	0.0299
주식 이외의 증권 (채권 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기타(REPO,대차,콜 등)	19,382	1	0.0044	5,251	0	0.0076
합 계	23,928	2	0.0093	9,252	2	0.0173

-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 주식의 매매회전율 >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	매매회전율	동종유형 평균
-------	-------	----------	-------	---------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의 평균가액(B)	(A/B)	매매회전율
38,764	2,274	47,722	2,275	10,886	20.9	13.29

주1)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펀드 동종유형(주식) 평균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목	제9기(2025.12.31)		제8기(2024.12.31)		제7기(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58,861,510		17,515,123		23,394,552
1. 현금및현금성자산	258,861,510		17,515,123		23,394,552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9,415,336,644		4,631,494,083		6,249,361,460
1. 지분증권	9,415,336,644		4,631,494,083		6,249,361,46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7,038,367		35,517,351		55,309,76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07,114		36,943		55,533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74,124		68,219		151,178	
4. 미수배당금	27,506,436		26,261,496		55,103,052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9,150,693		9,150,693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9,711,236,521		4,684,526,557		6,328,065,775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35,911,065		11,609,112		2,273,40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23,420,556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090,509		1,209,112		1,873,401	
5. 기타미지급금	10,000,000		10,000,000			
6. 기타부채	400,000		400,000		400,000	
부 채 총 계		235,911,065		11,609,112		2,273,401
자 본						
1. 원 본	5,827,488,000		4,370,616,000		5,827,488,00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647,837,456		302,301,445		498,304,374	
(발행좌수 당기: 600,000 좌		이익잉여금		504,801,178		716,317,062
전기: 450,000 좌		수익조정금		-202,499,733		-218,012,688
전전기: 600,000 좌)						
(기준가격 당기: 15,792.21 원						
전기: 10,384.26 원						
전전기: 10,542.99 원)						
자 본 총 계		9,475,325,456		4,672,917,445		6,325,792,37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711,236,521		4,684,526,557		6,328,065,775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9기(2025.01.01-2025.12.31)		제8기(2024.01.01-2024.12.31)		제7기(2023.01.01-2023.12.3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30,710,434		133,814,014		137,610,326
1. 이 자 수 익	2,239,697		1,848,064		2,886,738	
2. 배당금수익	228,470,737		131,965,950		134,723,588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4,760,968,129		1,360,033,925		1,885,032,090
1. 지분증권매매차익	4,753,617,467		1,359,312,897		1,881,902,857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350,662		721,028		3,129,233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34,685,035		1,343,699,429		1,086,106,714
1. 지분증권매매차손	225,783,768		1,266,074,991		930,702,75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08,901,267		77,624,438		155,403,955	
운 용 비 용		21,919,085		19,075,613		23,001,292
1. 운용수수료	5,507,010		3,820,769		6,460,977	
2. 판매수수료	2,202,706		1,528,200		2,584,289	
3. 수탁수수료	1,101,265		764,007		1,292,059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3,108,104		12,962,637		12,663,96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4,635,074,443		131,072,897		913,534,41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7725.124072		291.2731044		1522.5573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1.01 - 2025.12.31	0	47	0	50	0	49	0	95
2024.01.01 - 2024.12.31	0	63	0	30	0	48	0	47
2023.01.01 - 2023.12.31	0	75	0	60	0	81	0	6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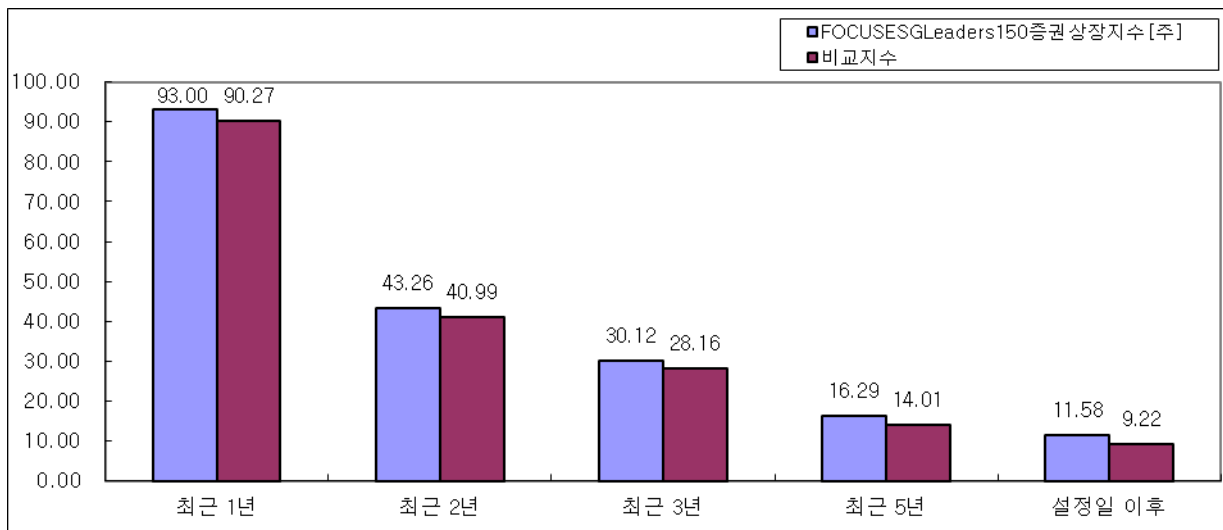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

구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25.03.03 ~ 26.03.02	24.03.03 ~ 26.03.02	23.03.03 ~ 26.03.02	21.03.03 ~ 26.03.02	17.12.12 ~ 26.03.02
투자신탁	93.00	43.26	30.12	16.29	11.58
비교지수	90.27	40.99	28.16	14.01	9.22
수익률변동성	19.60	17.93	17.47	16.72	19.46



주1) 비교지수 : KRX ESG Leaders 150 Inde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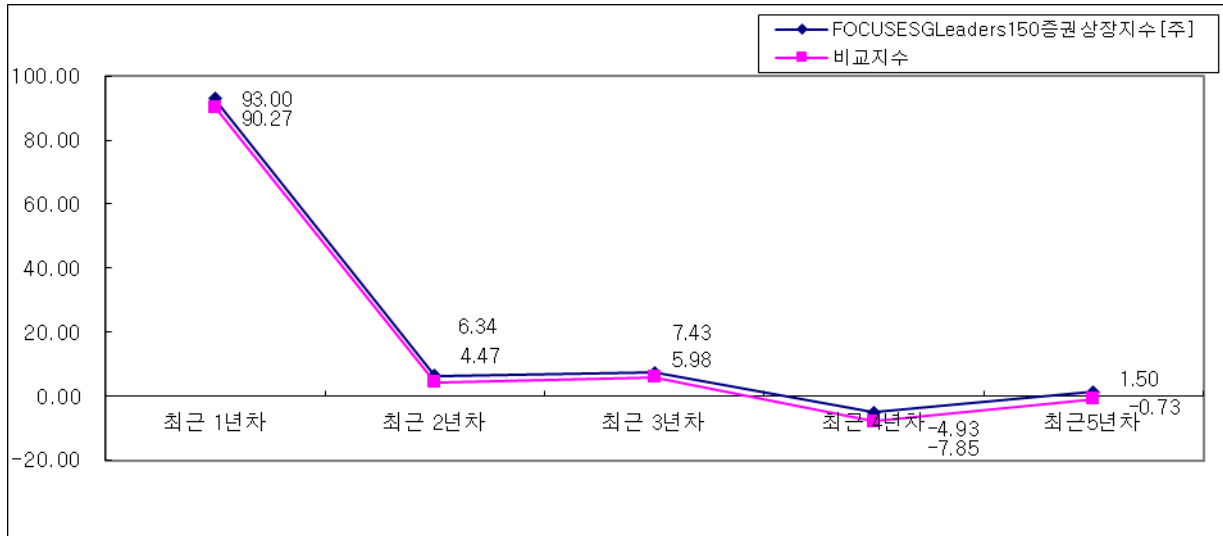
주2) 연평균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25.03.03 ~ 26.03.02	24.03.03 ~ 25.03.02	23.03.03 ~ 24.03.02	22.03.03 ~ 23.03.02	21.03.03 ~ 22.03.02
투자신탁	93.00	6.34	7.43	-4.93	1.50
비교지수	90.27	4.47	5.98	-7.85	-0.73



주1) 비교지수 : KRX ESG Leaders 150 Index 100%

주2)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 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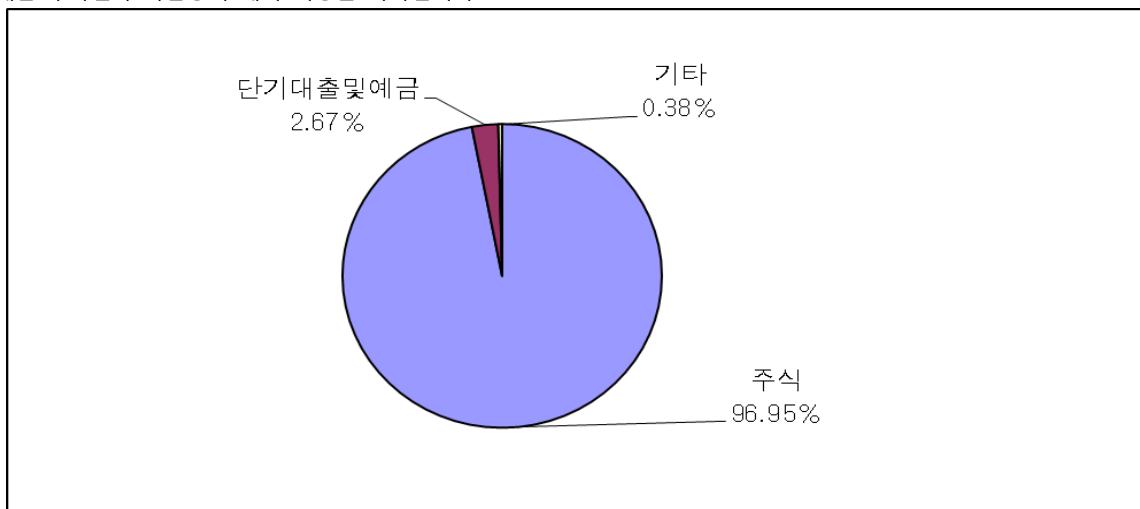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 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펀드분기말 2025.12.31 기준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원화	94	0	0	0	0	0	0	0	0	3	0	97
	(96.9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67)	(0.38)	(100.00)
합계	94	0	0	0	0	0	0	0	0	3	0	97
	(96.9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67)	(0.38)	(100.00)

주1)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ESG 이행현황]

①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 0.99 (2026.01.0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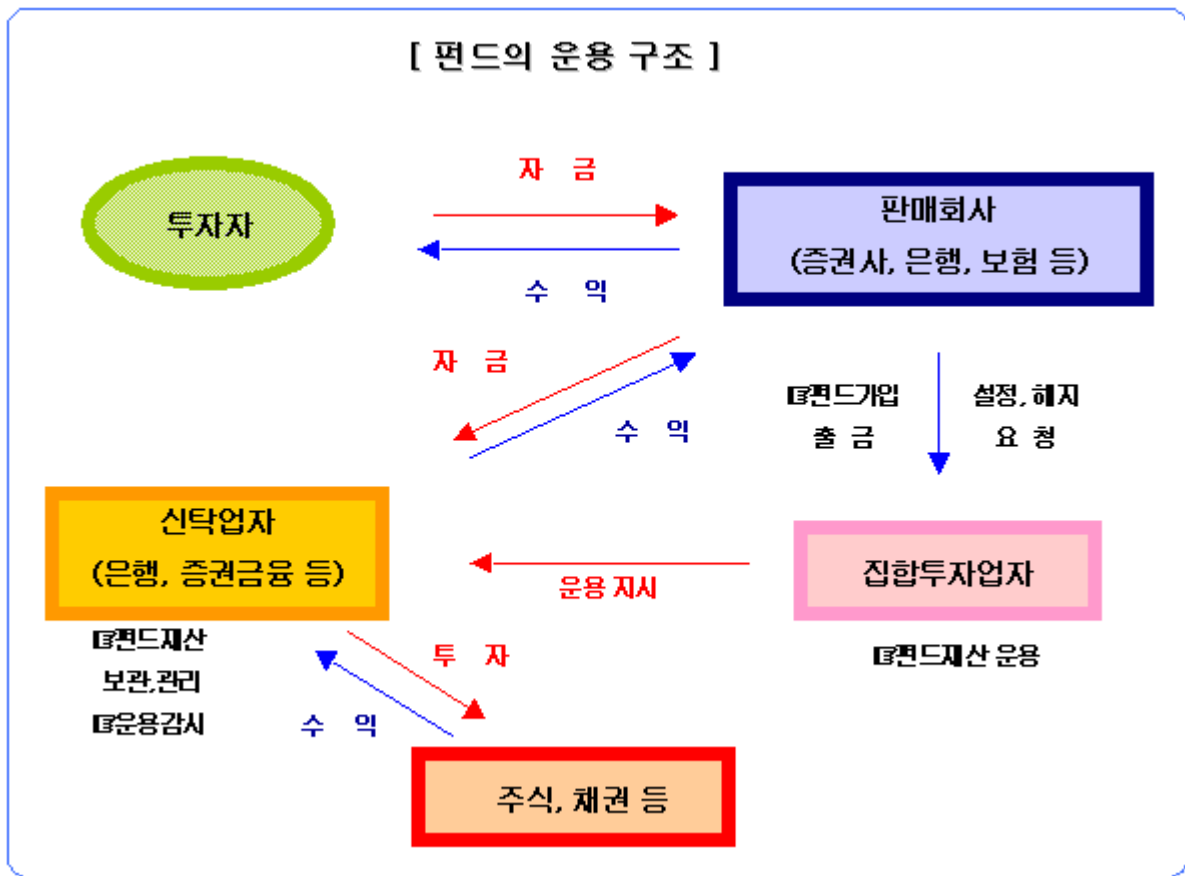
* 과거 1년 동안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② 주주활동 실시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③ 운용성과 내역

비교지수와의 운용성과 비교내역은 제3부의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브이아이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Three IFC 16층)
연 락 처	02-727-2700
홈페이지	www.viamc.kr
연 혁	1989. 10 제일투자신탁 설립 1999. 2 제일투자신탁운용 설립 1999. 4 제일투자신탁운용 영업개시 2000. 5 투자자문업 인가 2004. 9 CJ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08. 9. 하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20. 1. 브이아이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자 본 금	344억
주주현황	VI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99.99%, 기타 0.01%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등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2) 선관의무 등

-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가 ①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펀드파트너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요약 연결손익계산서
------------	------------

계정과목	2024.12.31	2023.12.31	계정과목	2024.1.1 ~ 2024.12.31	2023.1.1 ~ 2023.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27,724	21,727	영업수익	50,960	27,531
기타금융자산	-	-	영업비용	43,625	21,280
FVPL-금융자산	50,597	29,139	영업이익	7,335	6,251
FVOCI-금융자산	1,217	1,203	영업외수익	379	1,322
대여금및수취채권	10,675	10,306	영업외비용	194	80
종속기업및관계기업	1,402	3,899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7,520	7,493
유형자산	1,967	3,275	법인세비용	1,633	1,685
무형자산	1,029	1,252	당기순이익	5,887	5,808
기타자산	768	599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887	5,810
이연법인세자산	588	890	비지배지분순이익	-	-
자산총계	95,967	72,290	기타포괄손익	579	-119
FVPL-금융부채	68	-	당기총포괄손익	6,466	5,689
기타부채	25,889	7,831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6,466	5,689
당기법인세부채	751	1,677	비지배지분포괄이익	-	-
퇴직급여채무	74	64			
부채총계	26,782	9,572			
자본금	34,408	34,408			
기타불입자본	2,327	2,327			
기타자본구성요소	409	398			
이익잉여금	32,040	25,585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69,184	62,718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2.28 현재 / 억원)

집합투자 기구	증권					부동산/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혼합자산 파생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6,483	3,266	39,586	5,253	3,327	8,211	6,032	7,055	21,981	101,19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국민은행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 락 처	1588-9999
홈페이지 및 연혁	www.kbstar.com 1963. 2 . 1(구 국민은행) 2001. 11. 1(국민.주택은행 합병)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증권상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가) 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 락 처	02) 2180-04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0. 6 법인설립 2008. 5 신한은행 자회사로 편입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기준가격 계산업무 및 공고 업무
- ② 투자신탁의 결산 및 분배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의 작성 및 제공 업무
- ③ 정산금액의 계산 업무
- ④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⑤ 투자신탁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⑥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⑦ 투자신탁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산정 업무
- ⑧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업무
- ⑨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	--------	---------	----------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2251-13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설립일 : 2000.5.29 (www.koreaap.com)	설립일 : 2000.6.20 (www.bond.co.kr)	설립일 : 2000.6.15 (www.nicepni.com)	설립일 : 2011. 6.9 (www.fnpricing.com)	설립일 : 2020.6.19 (www.egap.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 평가 및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7. ESG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를 완전복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로 이 투자신탁의 기초지수 산출기관에서 ESG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② 투자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투자자총회의 소집

- ① 투자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투자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의결권 행사방법

- ①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투자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투자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것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연기투자자총회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연기투자자총회에서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②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③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투자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투자자가 그 투자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② 투자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③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④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⑤ 투자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⑥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어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로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집합투자규약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법 제88조제2항제4호에 따른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이 투자신탁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므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⑤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신탁업자,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⑤-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한국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게시기간(이의신청기간)내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viamc.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③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①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

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②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성명(상호)	관계	거래의 종류	자산의 분류	거래금액
해당사항 없음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p>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p> <p>①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p> <p>②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블록매매, 차익거래매매, 파생상품매매,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p> <p>③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p>
평가항목	<p>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 및 통화관련 장내파생 상품의 중개회사</p> <p>① 재무건전성</p> <p>② 정보제공정도 및 수준(운용지원 및 세미나 개최 등 포함)</p> <p>③ 결제이행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p> <p>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의 중개회사</p> <p>① 정보제공 정도 및 수준(기업분석 자료 및 운용지원)</p>

	② 기업방문 및 NDR 협조 ③ 운용관련 세미나 ④ 요청자료 협조(운용에 필요한 자료요청 등) ⑤ 결제이행 능력(매매업무의 신속, 정확성 등)
--	--

주1)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 평가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ESG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어 (가나다순)	내 용
개방형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됩니다.
납부금등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납부자산구성내역 (Portfolio Deposit Fil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설정단위 (Creation Unit)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최소수량을 말합니다.
설정단위의 평가금액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투자자총회	법령 및 신탁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 할 때 펀드의 모든 투자자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에 따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말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신탁업자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펀드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지수산출기관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지수를 산출, 관리 및 공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정참가계약	이 투자신탁에 관한 지정참가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통상 펀드라고 말하며, 대표적으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을 말합니다.
추가형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적오차율	수익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추적대상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즉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상 연 %로 표시되며, 투자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펀드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해지	펀드의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중도환매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펀드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때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서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다시 펀드재산에 편입됩니다.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